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1년 달라지는 연구제도

20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본 방향]

연구제도
개선체계의
변화

연구자 중심
체감 촉진
상시 개선
일관성 강화
체계성 제고

연구제도의
변화

신뢰 기반
자율성 제고
유연성 강화
중장기적 시각
행정부담 경감

연구지원
체계의
변화

지원체계 구축
지원역량 제고
책임성 강화

달라지는 연구제도

연구제도 개선체계의 변화

1.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2.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3. 연구자 중심의 상시 제도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4.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체감 속도가 높아집니다!

연구지원 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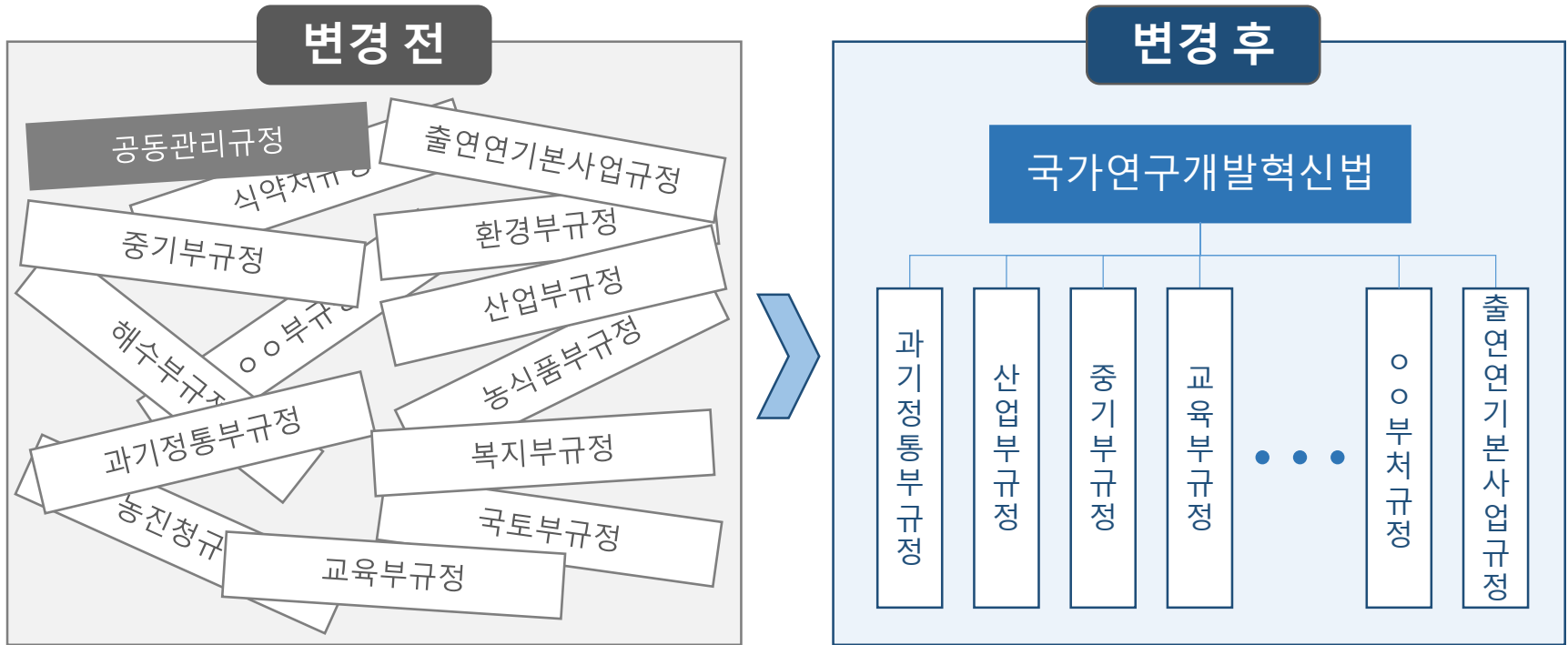
33.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체계화됩니다!
34.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효율화됩니다!

연구제도의 변화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6. 연구자 역량과 연구계획의 충실성 중심으로 과제가 선정됩니다!
7.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개발기간과 일치됩니다!
8. 연구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 됩니다!
9.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이 간소화됩니다!
10.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출연기관의 국내출장 운임비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13. 연구비 지급 지연시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이 인정됩니다!
14.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직접비/간접비가 분리 지급됩니다!
15. 긴급상황 시 연구시설/장비 구매시한이 완화됩니다!
16.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7.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9.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20.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21.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이월됩니다!
22. 연구비 사용 증빙이 간소화됩니다!
23.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보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24.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25. 모든 대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26.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27. 한 학기 학생인건비 일괄 선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8. 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9. 3책5공 제도가 완화됩니다!
30. 참여율 관리가 폐지되고, 인건비계상률 관리로 대체됩니다!
31.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됩니다!
32. 연구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33. 제재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신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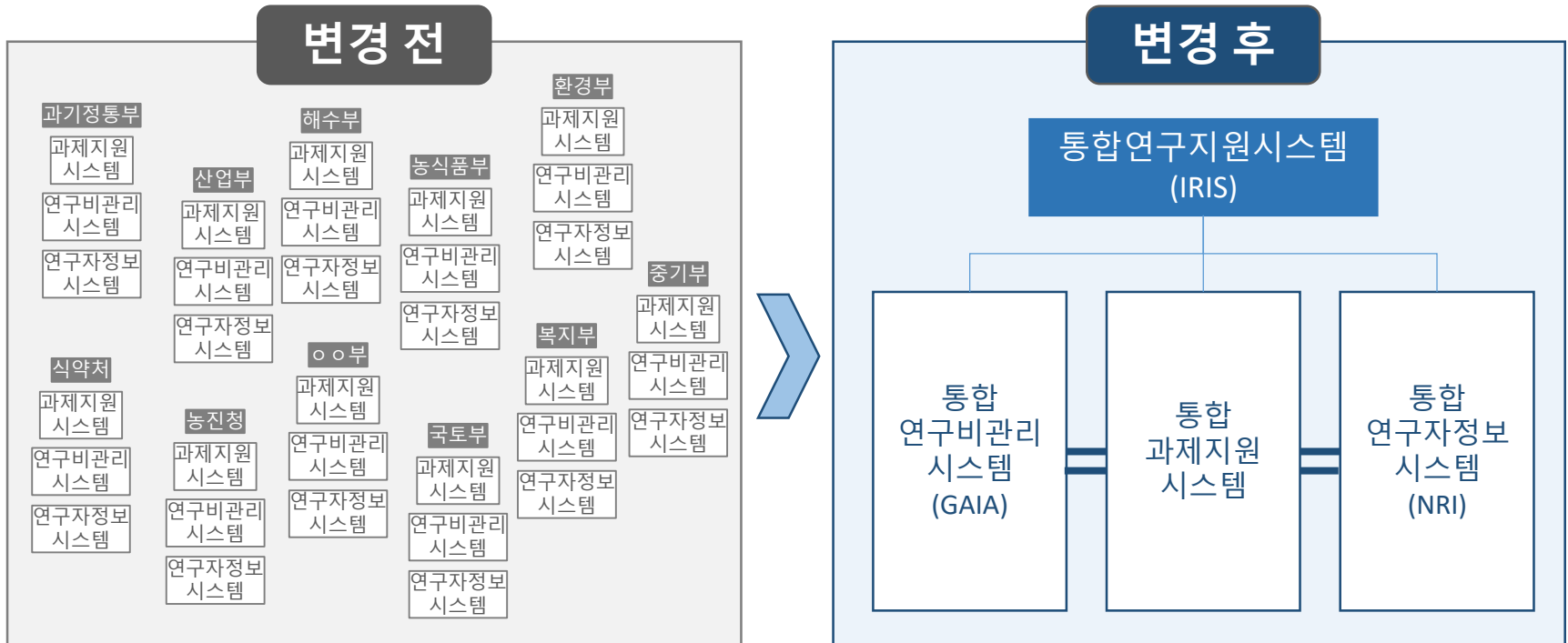
1.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 부처별 상이한 규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습니다 ”



2.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 부처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3. 연구자 중심의 상시 제도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 늘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자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변경 전

비정기적 제도개선

< 신 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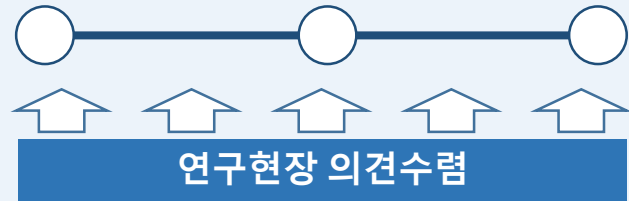
변경 후

매년 제도개선

기본지침
(3월)

제도개선안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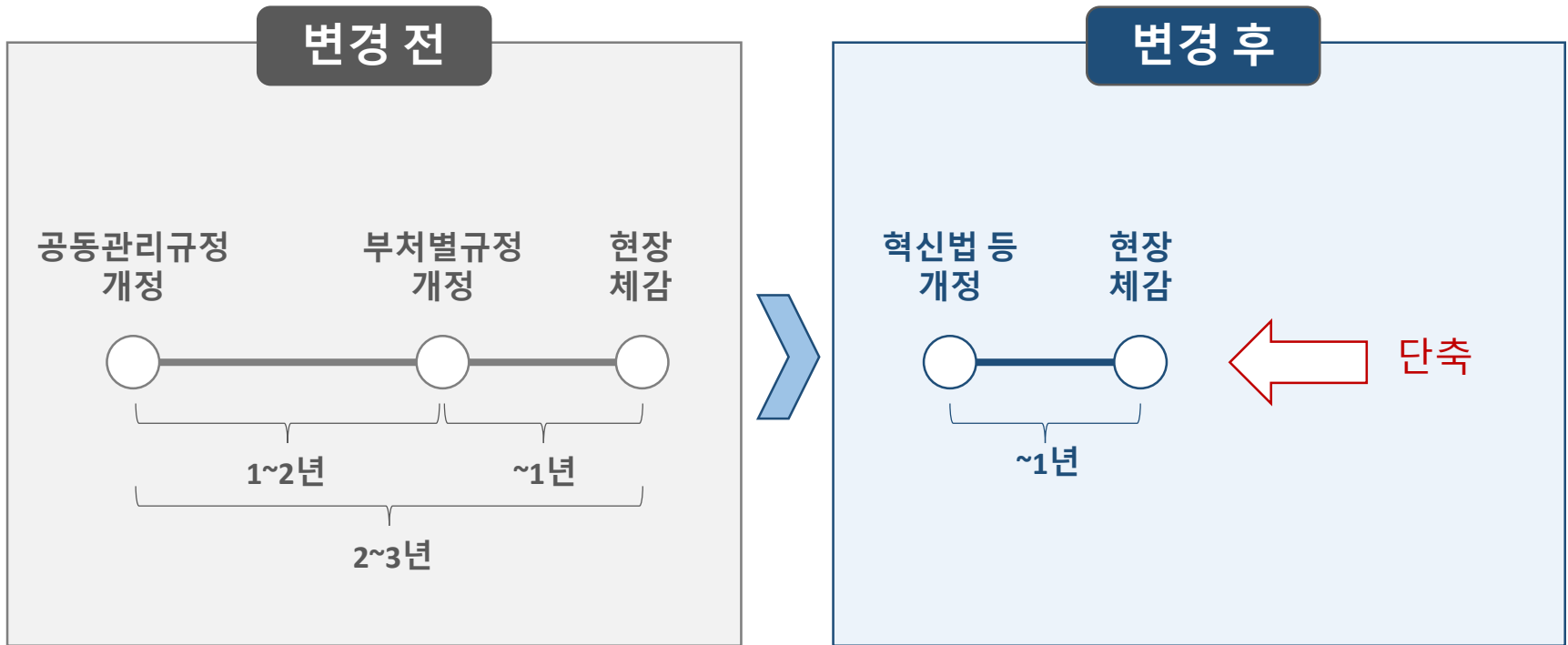
규정개정
(12월)



대국민 제도개선 소통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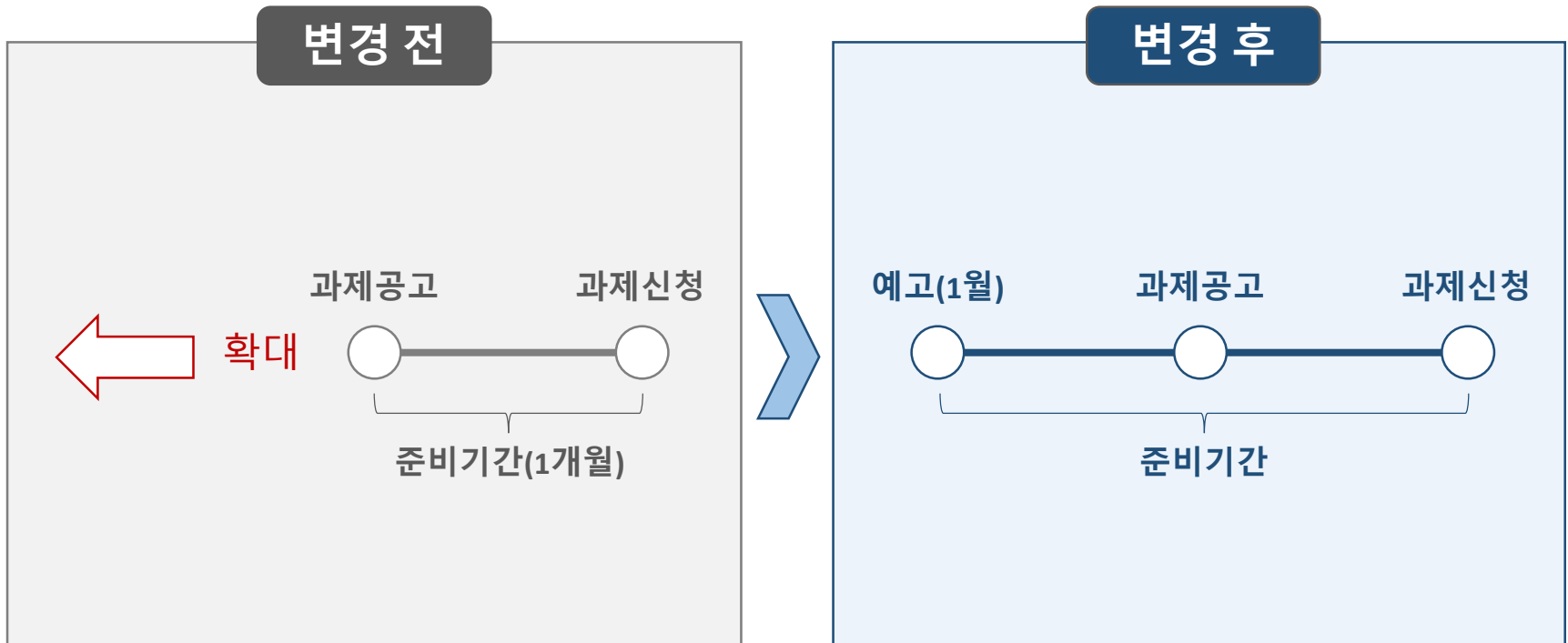
4.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체감 속도가 높아집니다!

“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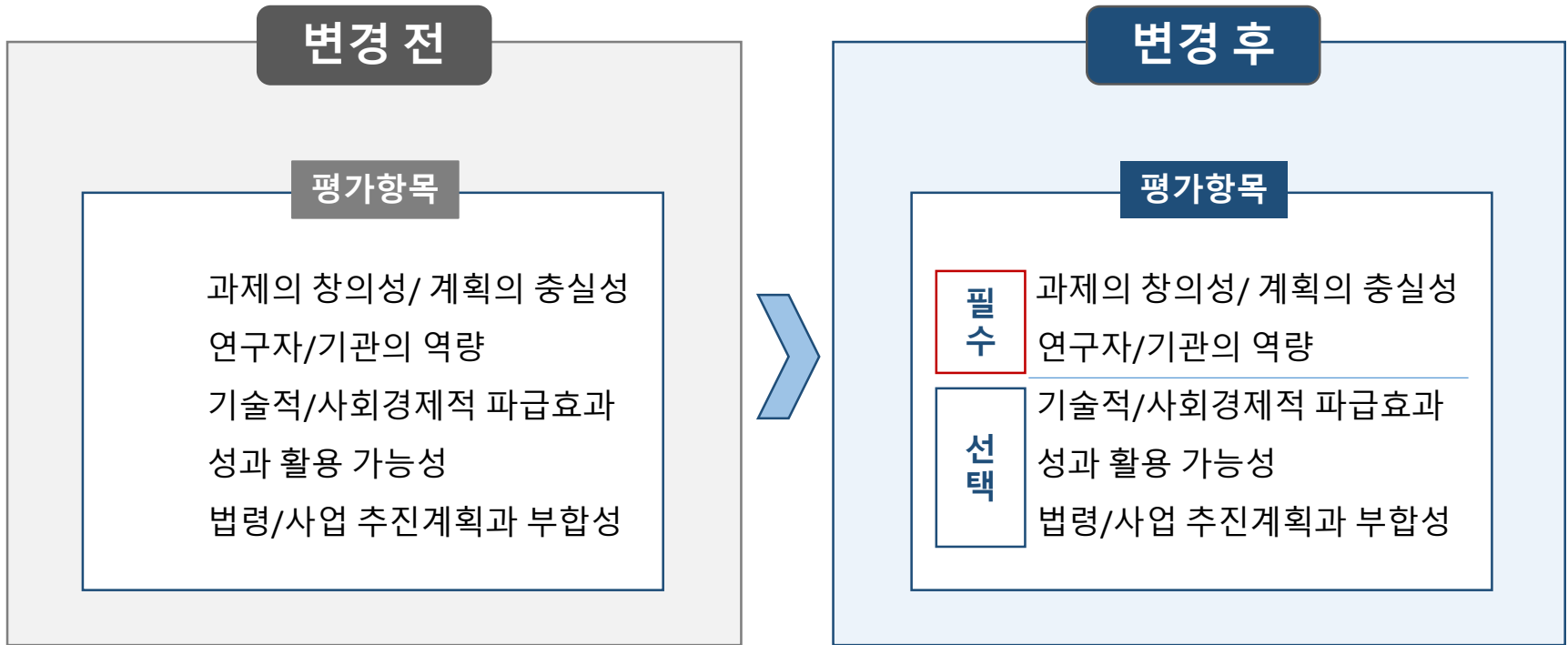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 연구자가 미리 과제 공고를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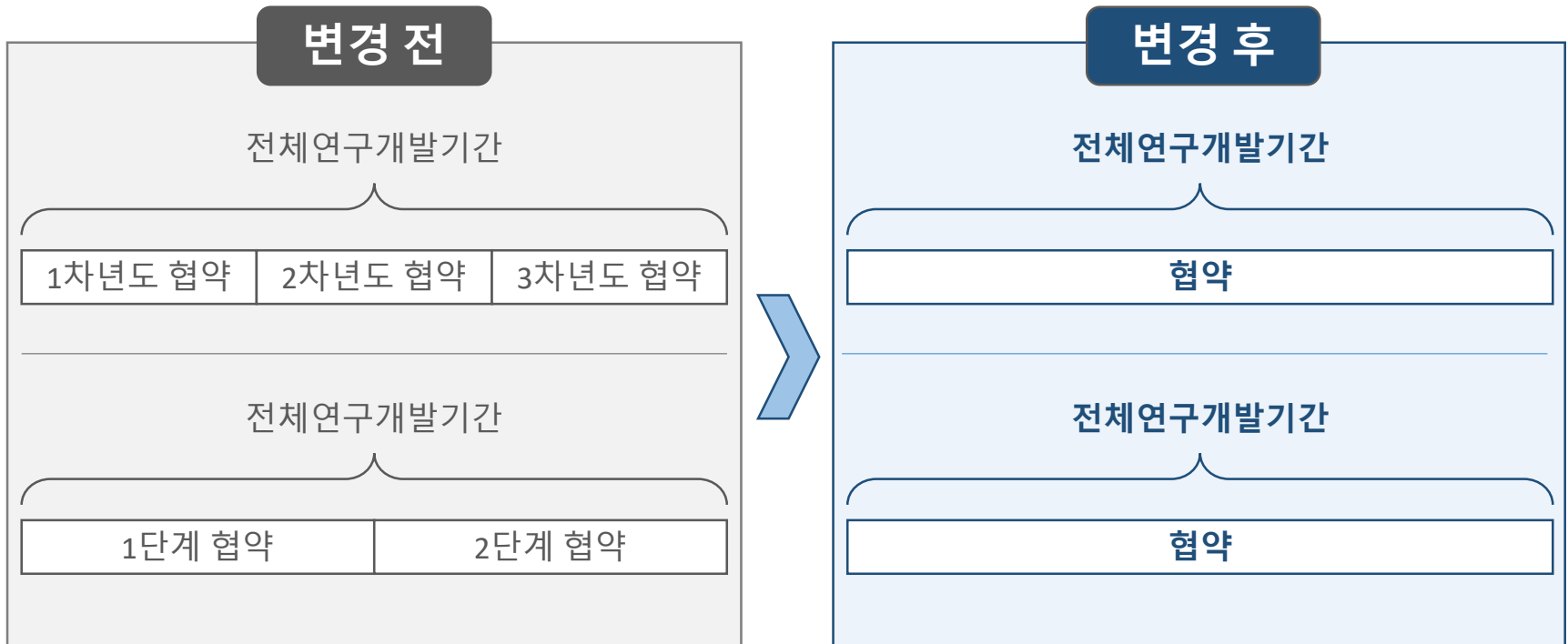
6. 연구자 역량과 연구계획의 충실성 중심으로 과제가 선정됩니다!

“ 우수한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7.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개발기간과 일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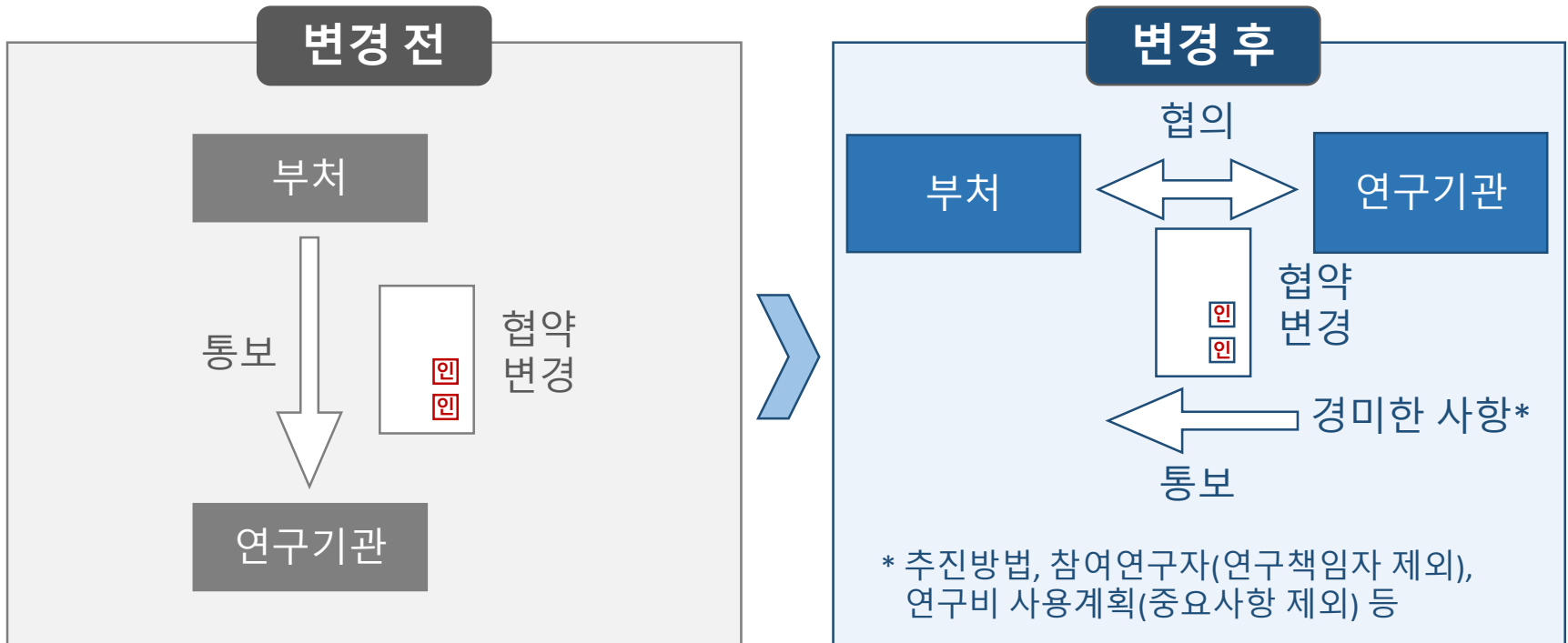
“ 다년도 과제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지원·관리하겠습니다 ”



8.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됩니다!



“ 연구기관/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높ی겠습니다 ”



9. 연구비 사용계획 작성이 간소화되고, 사용내역/ 연구자별 참여율 작성이 폐지됩니다!

“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겠습니다 ”

변경 전

	참여연구자	참여율	금액	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내역	수량	단가	금액
연구재료비	내역	수량	단가	금액
연구활동비	내역	금액	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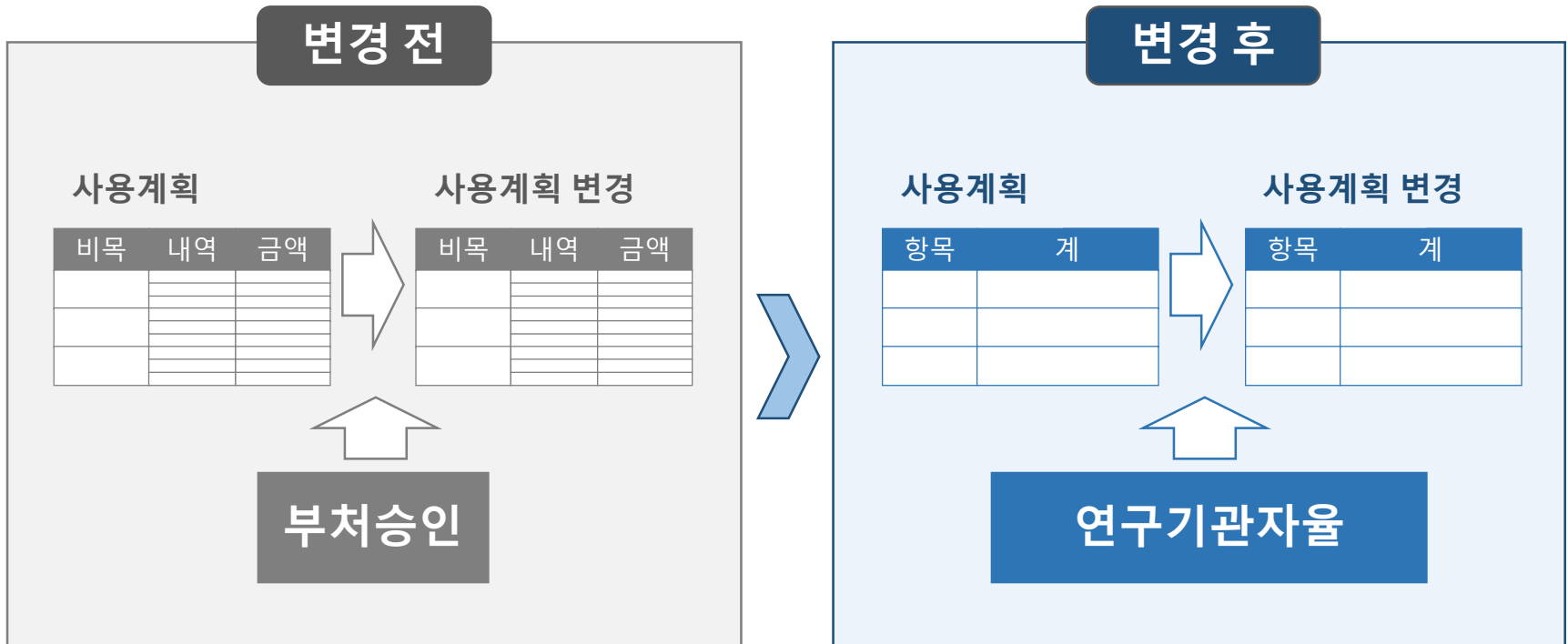
	참여연구자	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계	
연구재료비	계	
연구활동비	계	

* 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는 내역 작성

과제 수행 비용은 연구비 사용계획에 명시 없이도 사용 가능

10.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1. 정부출연기관의 국내출장 운임비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사후 실비 정산

* 출장 후 비용 증명



변경 후

사전 정액 지급

* 출장 후 내부시스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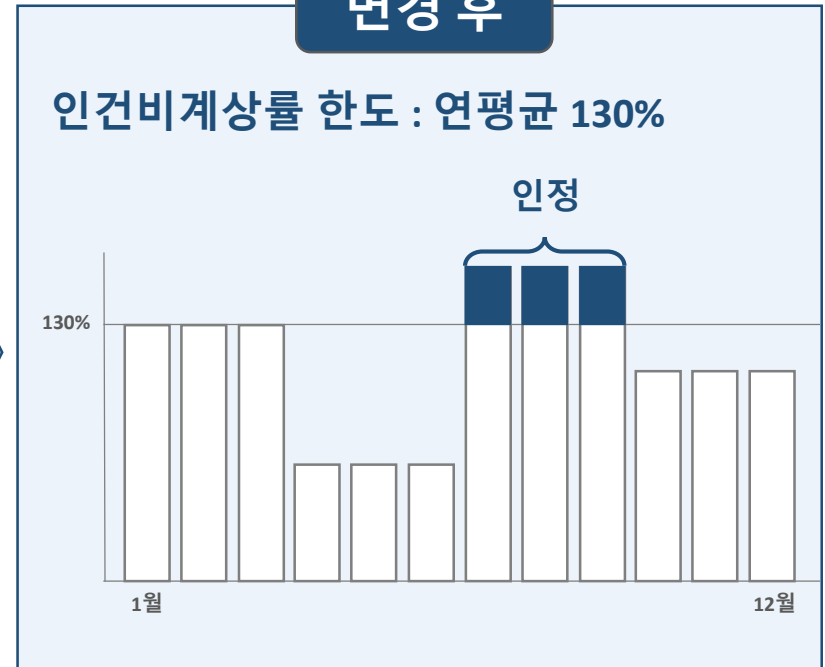
12.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 정부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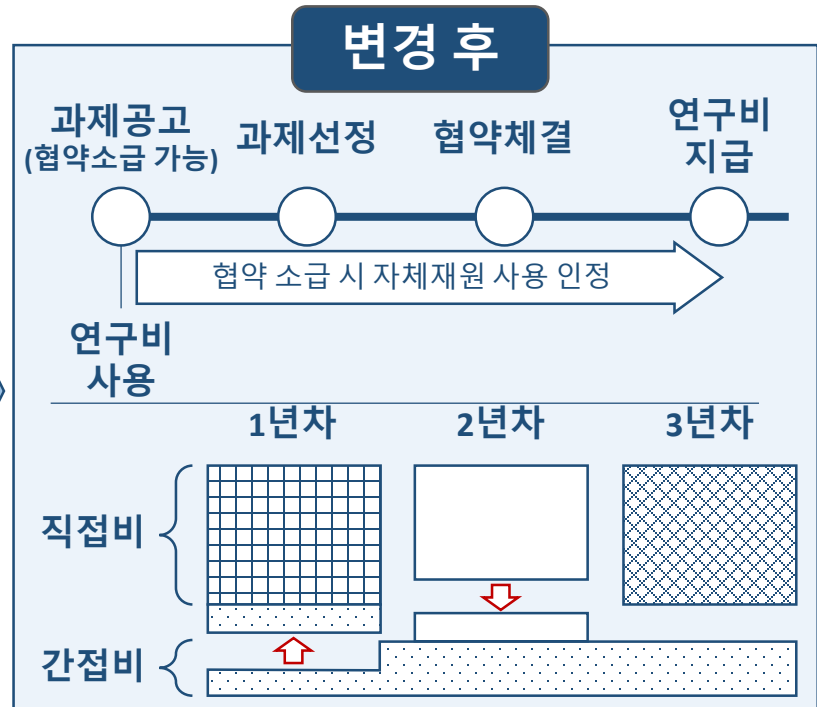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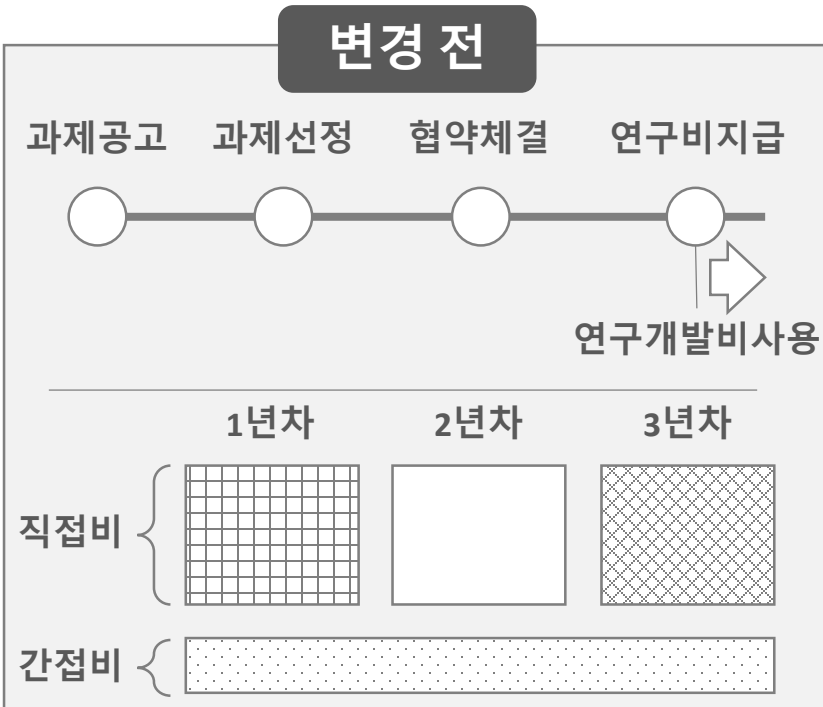


변경 후



13. 연구비 지급 지연 시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이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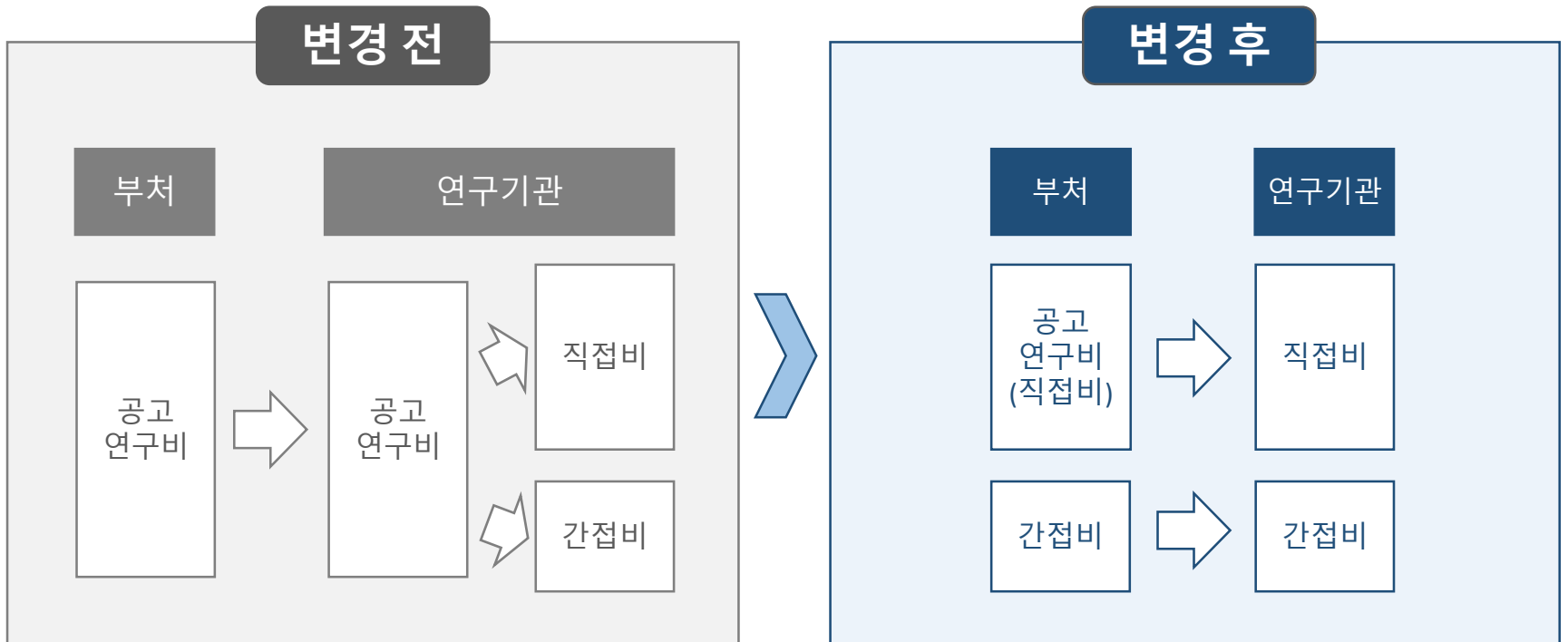
“ 적기의 신속한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14.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직접비/간접비가 분리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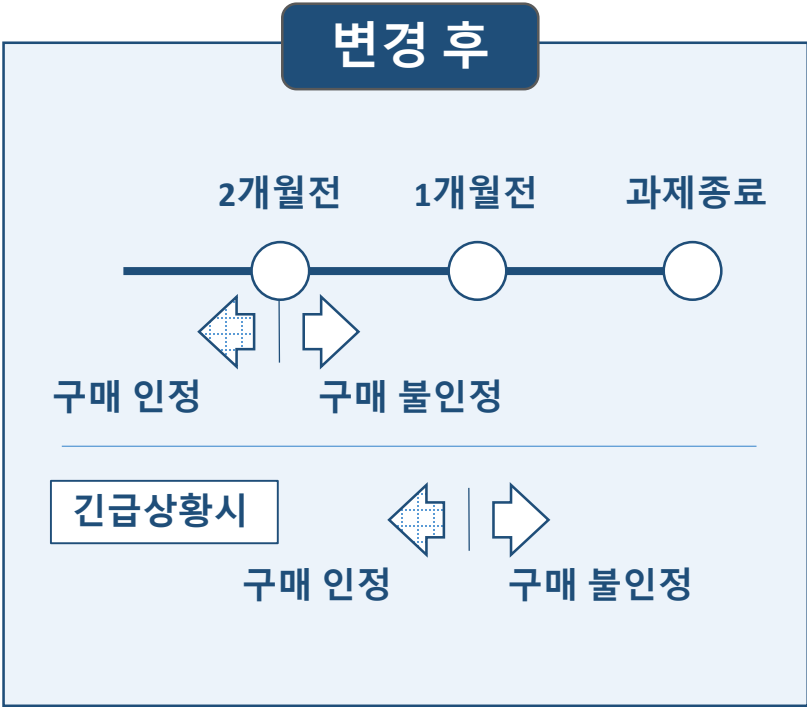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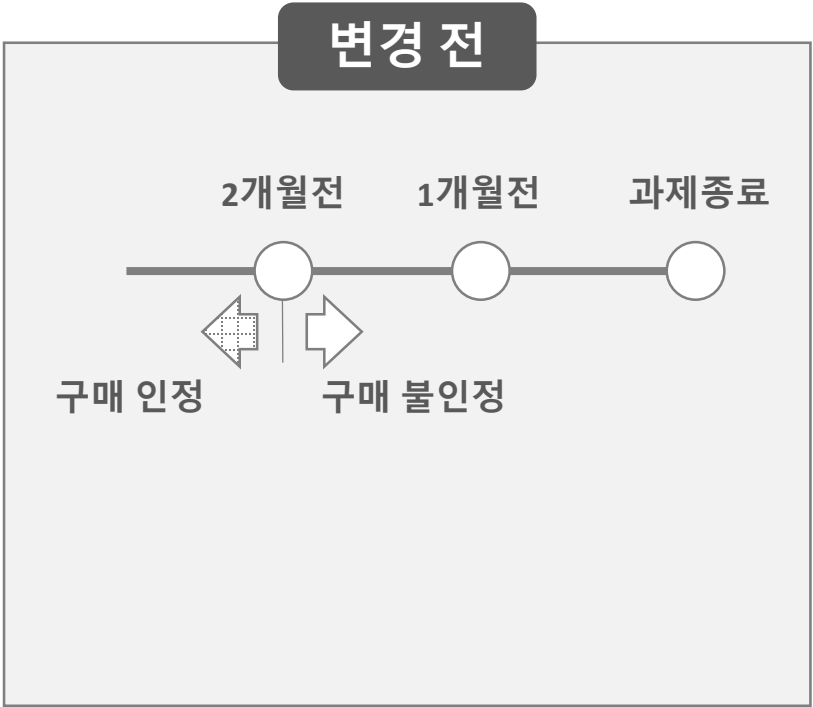
'20년 제도개선

☞ “ 연구자는 연구에, 지원인력은 연구지원에 집중을 지원하겠습니다 ”



15. 긴급상황 시 연구시설/장비 구매시한이 완화됩니다!

“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긴급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



16.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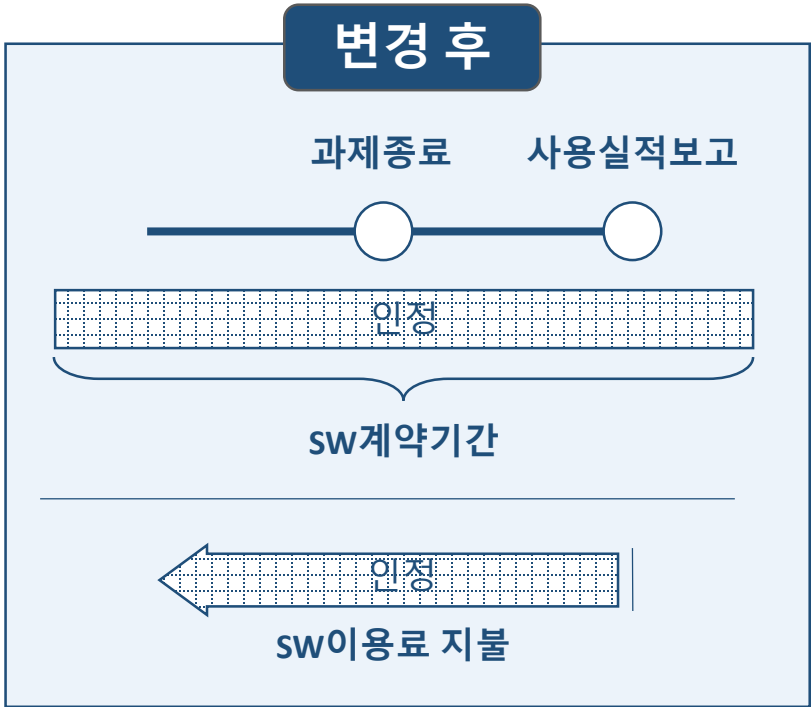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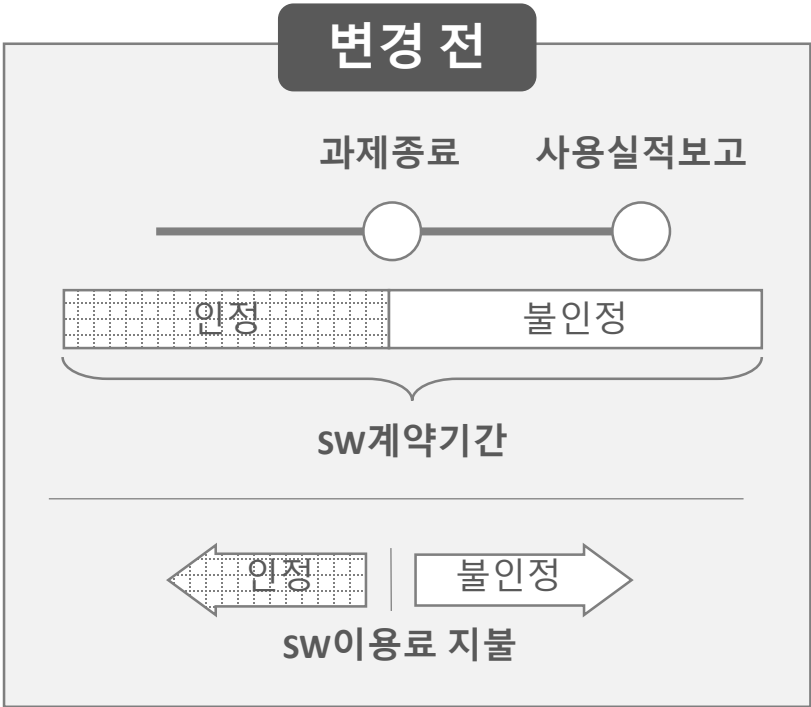
변경 후



17.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제도개선

☞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18.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20년 제도개선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지원 서비스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변경 전

연구근접지원인력 사용가능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

* 단, 인건비와 간접비 중복지급 불가

변경 후

연구근접지원인력 사용가능 연구개발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 단, 인건비와 간접비 중복지급 불가

19.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

연구비 사용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원칙



신용카드

예외



계좌이체



현금

* 일부부처에만 해당

변경 후

원칙



신용카드



계좌이체

예외



현금

20.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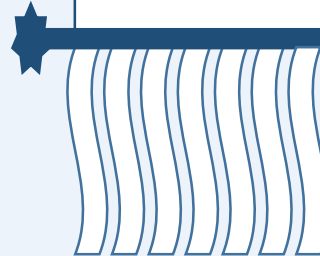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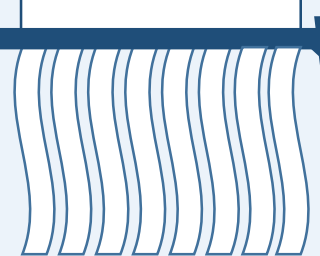


변경 후

카드매출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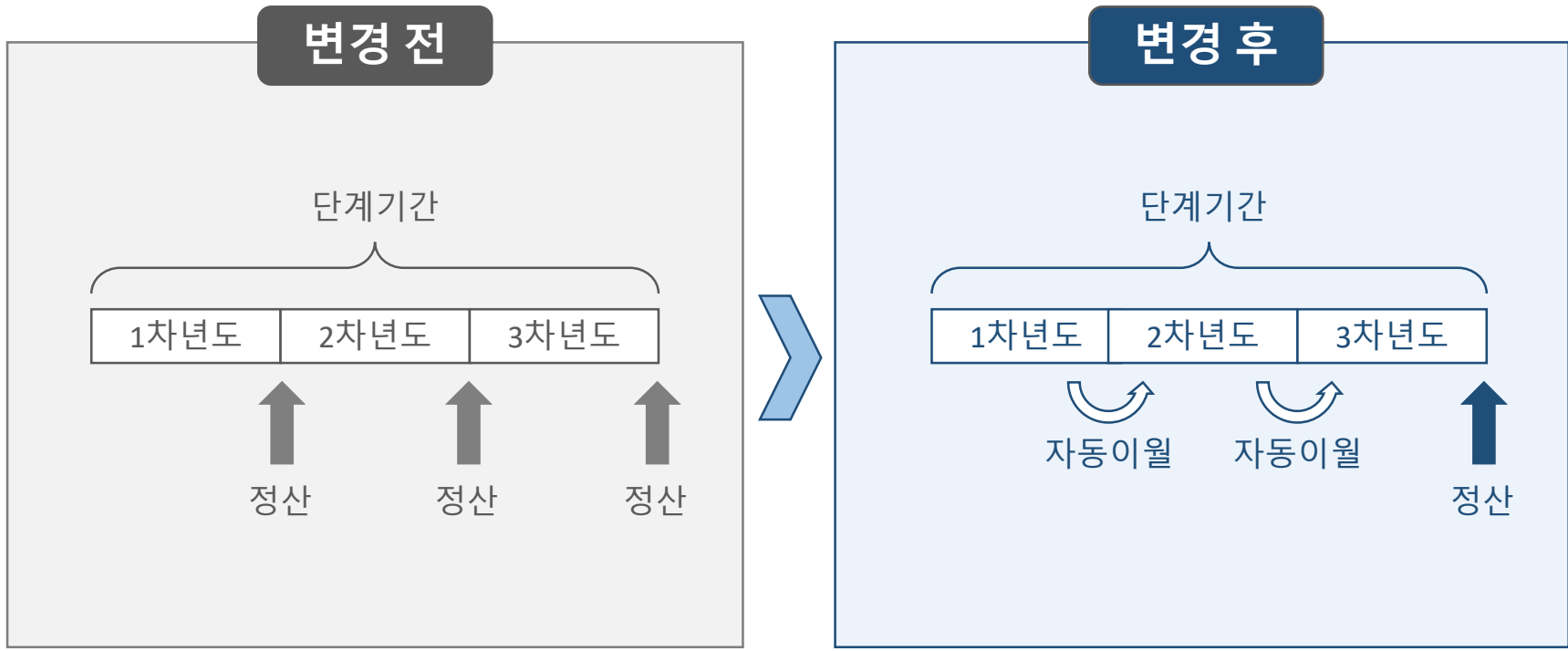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21.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이월됩니다!

“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



22. 연구비 사용 증빙이 간소화 됩니다!

“ 중복적인 자료 요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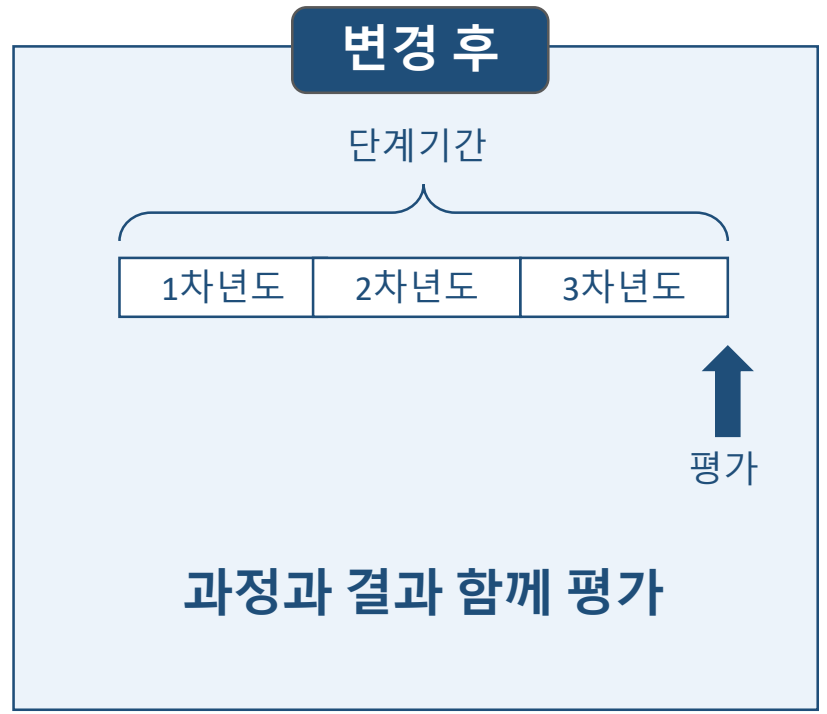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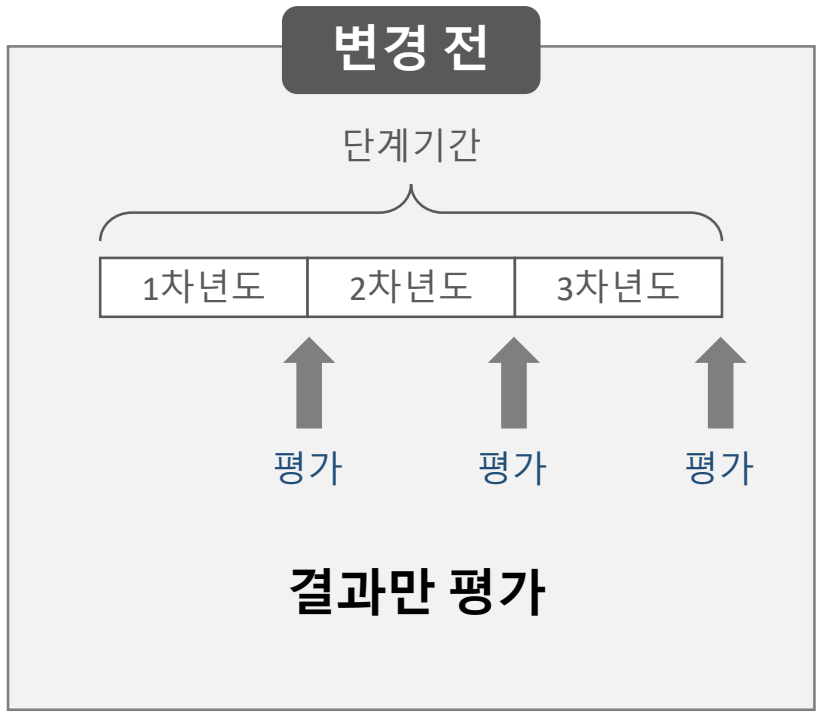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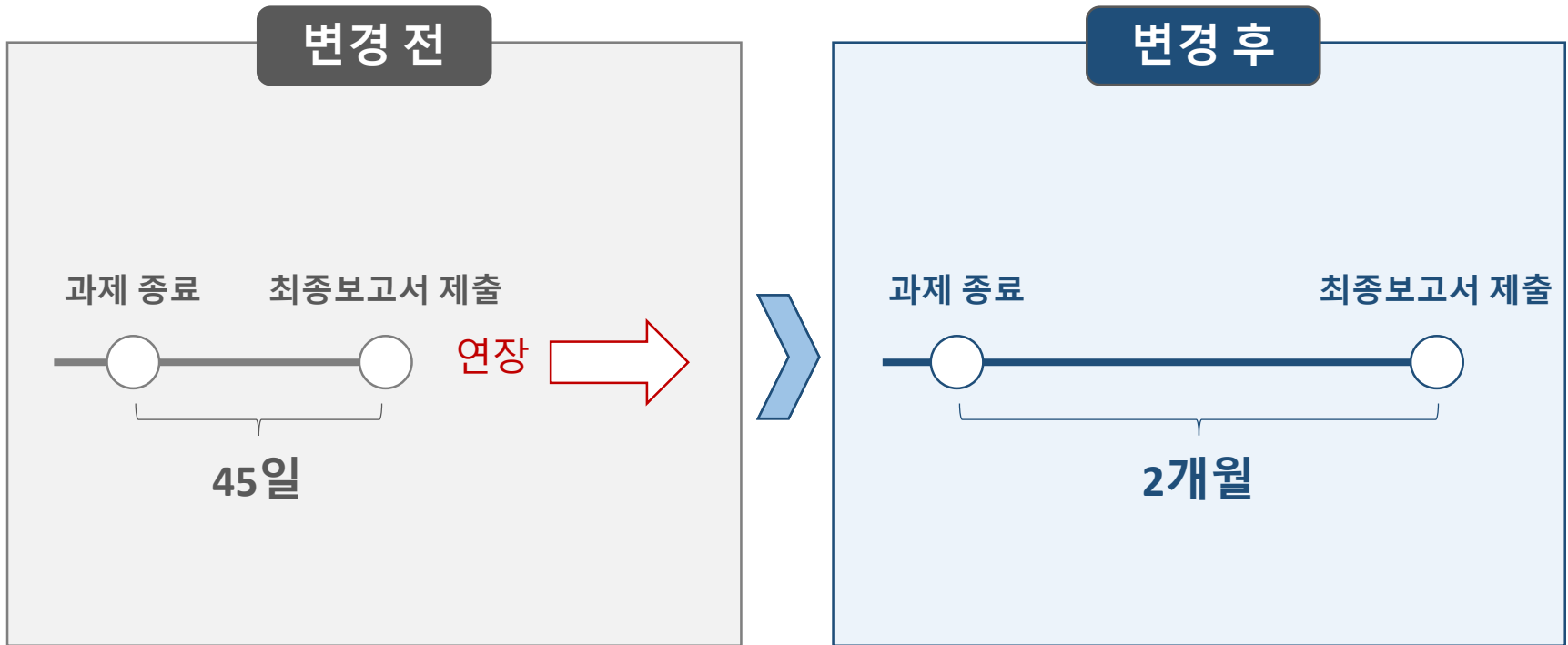
23.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 창의적인 연구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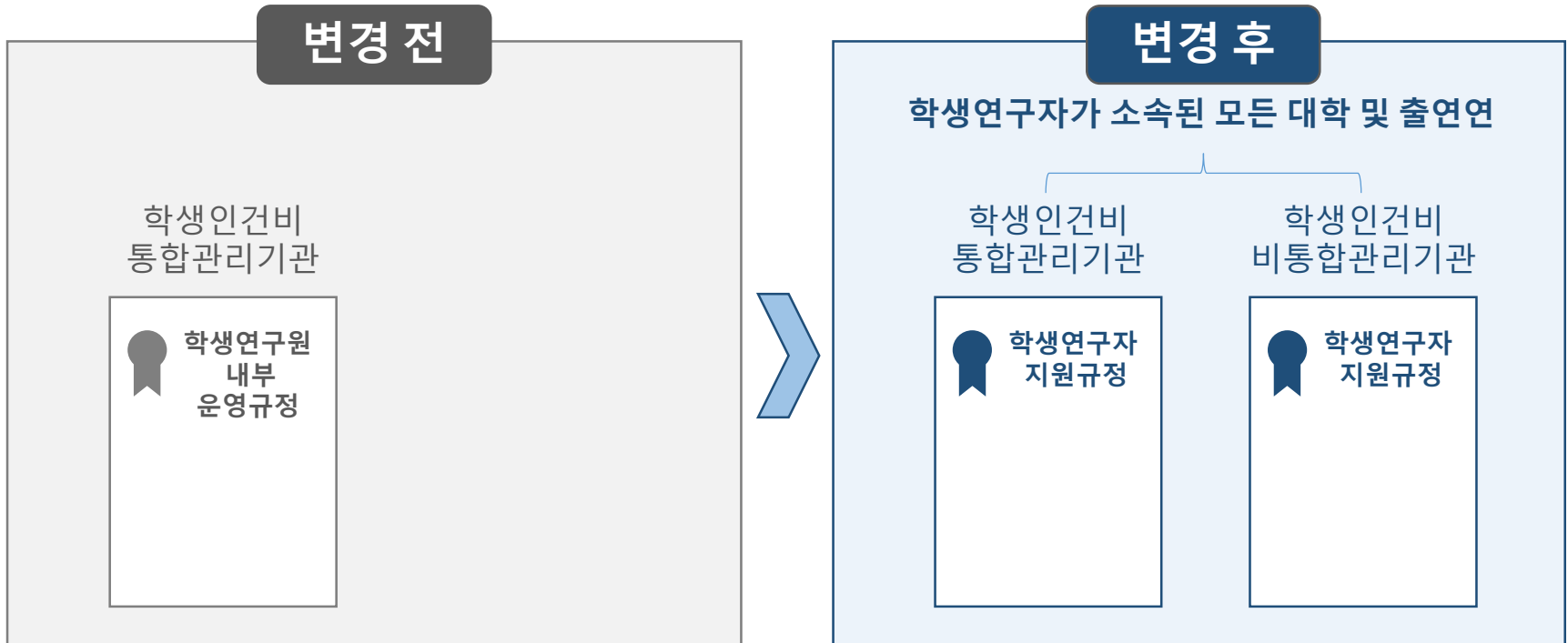
24.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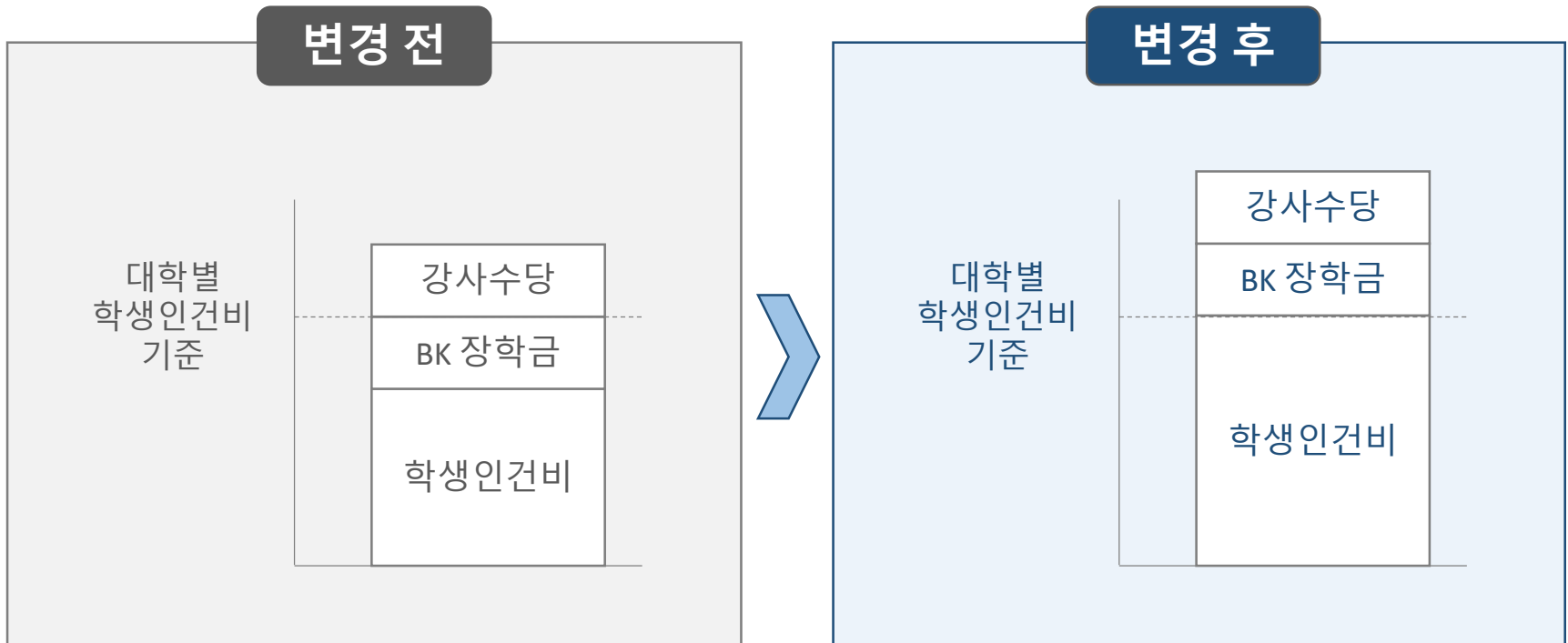
25. 모든 대학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 학생연구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



26.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 학생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7. 한학기 학생인건비 일괄 선지급이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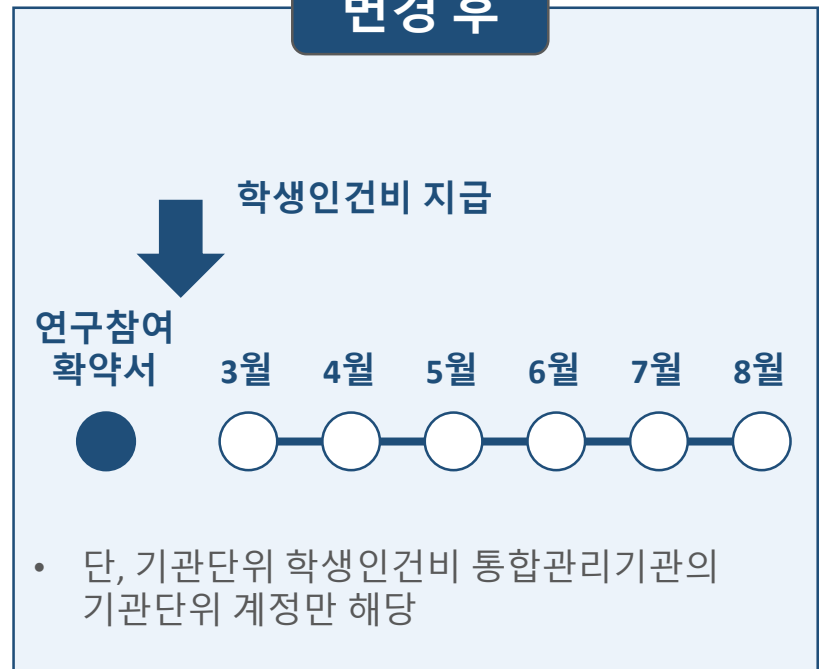
'20년 제도개선

“ 학생연구자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28. 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학생인건비가 단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변경 전

<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기간 >



변경 후

<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기간 >



29. 3책5공 제도가 완화 됩니다!



“ 연구 역량과 의욕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연구자의 의무사항

제외과제

6개월 내 종료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시험/분석연구
과제 조정/관리과제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5천만원 이내 소액과제



변경 후

부처의 재량사항

제외과제 확대

변경 전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인력양성,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과기자문회의 심의과제
(소부장, 코로나19, 탄소중립, 소액과제 등)

30. 참여율 관리가 폐지되고, 인건비계상률 관리로 대체됩니다!



“ 연구 역량과 의욕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참여율 = 실제 참여율과
인건비계상률 개념이 혼재

과제 참여시 반드시 참여율 계상
참여율 100% 한도(정부출연기관 130%)

→ 참여율 한도 초과시
과제 추가 참여 불가



변경 후

인건비계상률로 일원화

과제 참여시 인건비계상률 미계상 가능
인건비계상률 100% 한도(정부출연기관 130%)

→ 인건비계상률 한도 초과시에도
인건비계상률 미계상으로
과제 추가 참여 가능

31. 정부납부 정액기술료제도가 폐지됩니다!

“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변경 전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기준

변경 후

< 폐 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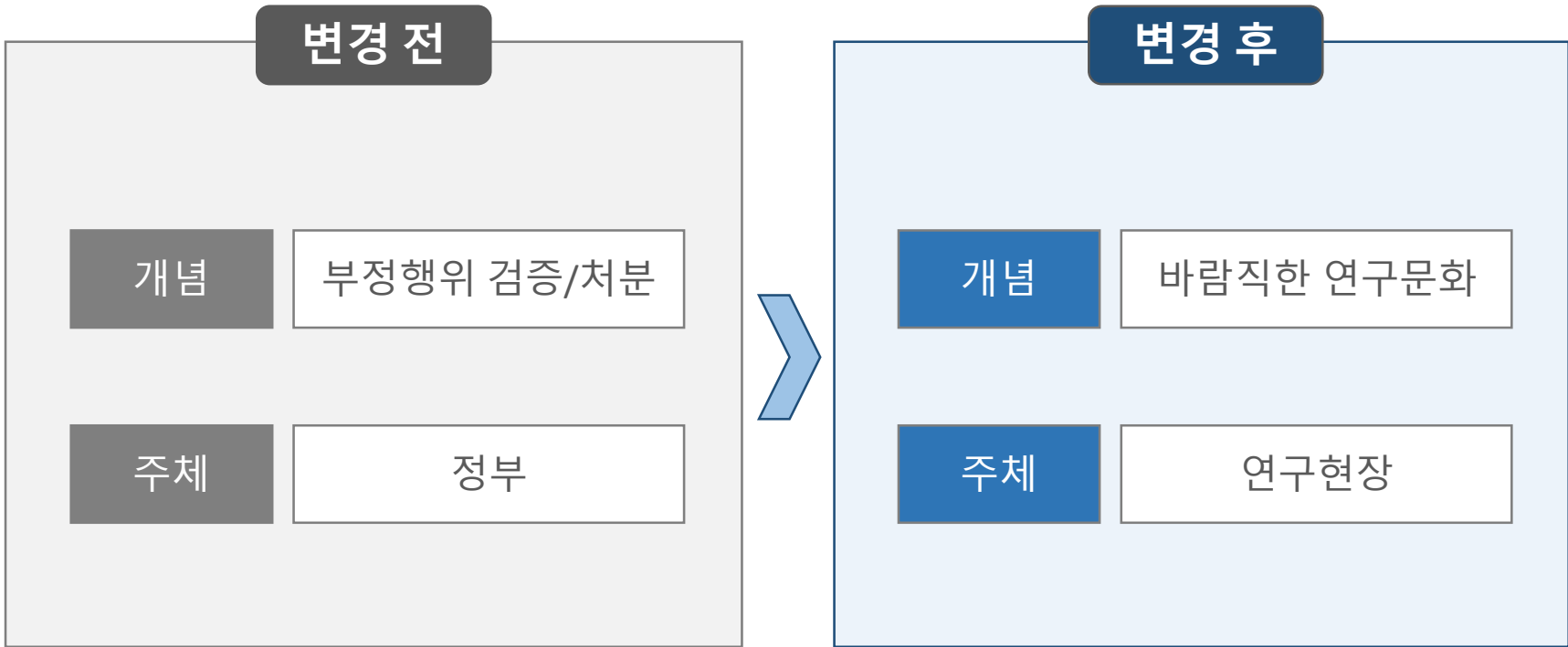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전 부처 한도/기준 통일

한도: 정부지원금 대비 중소 10%, 중견 20%, 대 40%
기준: 착수기본료 폐지 + 매출액 대비 중소 5%, 중견 10%, 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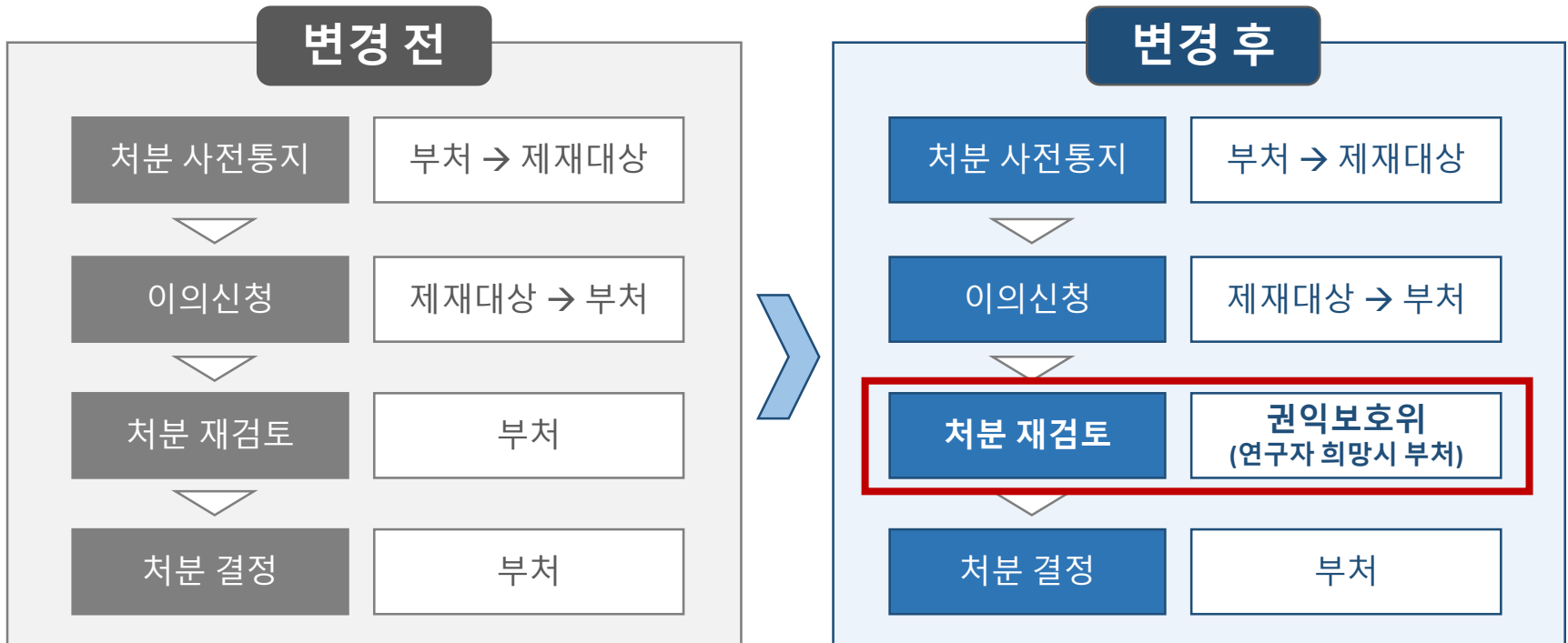
32. 연구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현장 주도의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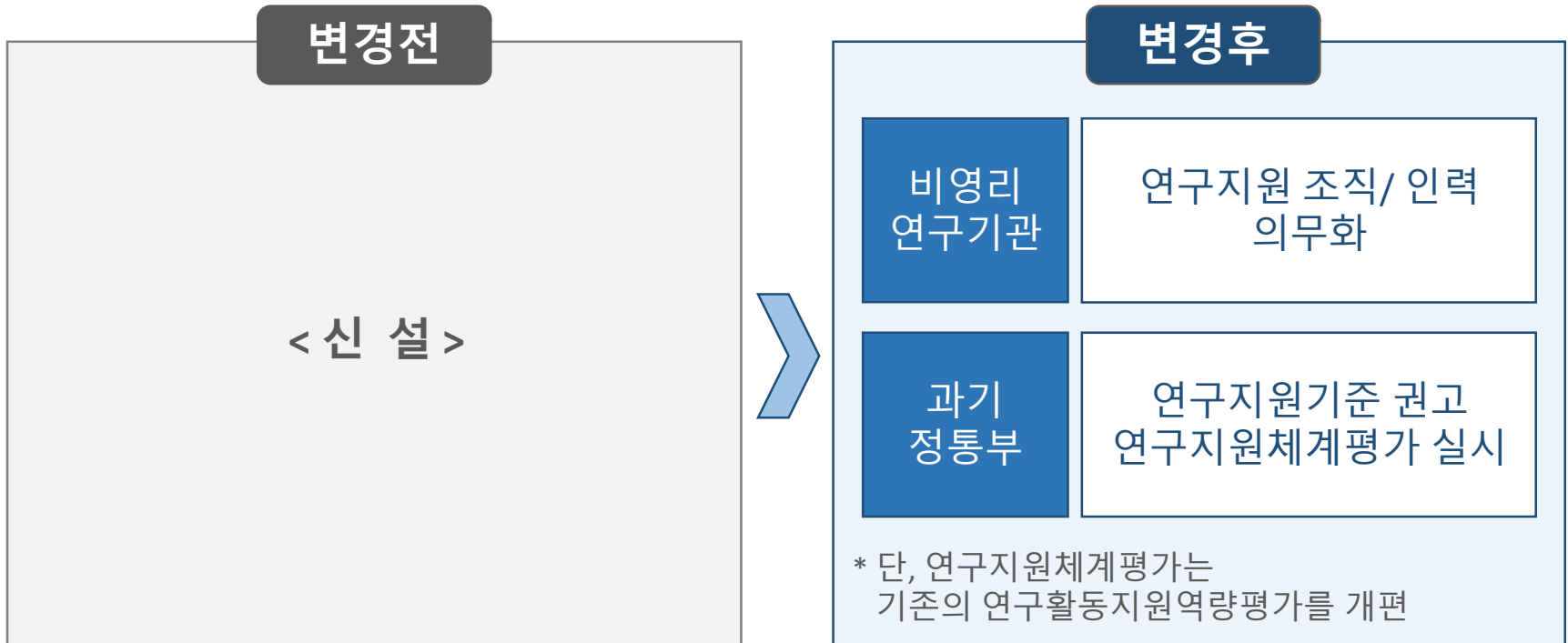
33. 제재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신설됩니다!

“ 억울/과도하게 제재를 받는 사람/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34.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체계화 됩니다!

☞ “ 연구지원 서비스 향상으로 연구성과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35.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효율화 됩니다!

☞ “ 전문기관의 연구지원, 성과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전

< 신 설 >

변경후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감사합니다